

#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
------------	-----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춰 정비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내버스 기·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시내버스 기·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로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사용시설”을 각각 “시내버스 기·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 · 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소방법”을 “「소방법」”으로 한다.

제7조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11조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사용료)</b> ① (생략)            ② 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가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 · 종점지의 사용료율은 <u>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p> <p>③ (생략)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u>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한다.</p> <p>⑤ (생략)</p>	<p><b>제5조(사용료)</b>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⑤ (현행과 같음)</p>
<p><b>제6조(의무)</b> ① 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시내버스 기 · 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사업자 또는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결정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p>	<p><b>제6조(의무)</b> ① ----- 시내버스 기 · 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            ② ----- 시내버스기 · 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 ----- 시내버스 기 · 종점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p>
<p><b>제7조(행위 제한)</b> 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 · 종점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5. (생략)</p>	<p><b>제7조(행위 제한)</b>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현행과 같음)</p>
<p><b>제8조(사용허가의 취소)</b>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 5. (생략)            ② (생략)</p>	<p><b>제8조(사용허가의 취소)</b>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령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 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하고,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가. 첫째연도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

규모 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 나. 둘째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 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 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

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07년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 I. 심사 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 4. 12)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차준일)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춰 정비함(안 제5조).

###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예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앞의 내용과 같음.

#### 2.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요율 및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 12. 30 제정되고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요율 및 연체요율의 법적 근거를 정비 함.
- 안 제6조에서는 약칭사용을 정비 함.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 함.

####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운송사업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는 사용료요율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 12. 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분리·제정되고 공영차고지 사용료 연체요율의 법적 근거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06. 5. 12 전문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법적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제명, 띄어쓰기, 약칭사용, 인용조문 등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